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34

제출년월일 : 2010. 11. 3.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함

☐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표기법으로 조정 (안 제2조제2항)

☞ 따사롬길19(초지동 604-3) ⇒ 원초로76(초지동)

나. 운영 위탁 기간에 대한 사항 조정 (안 제4조제2항)

☞ 위탁기간 3년 ⇒ 3년이내

다. 운영협의회 기능 및 위원 위촉에 대한 제반사항 규정(안 제7조제2항)

☞ 당연직 : 청소년담당국장, 과장, 지원센터 소장

⇒ 청소년담당국(소)장, 청소년지원단 단장, 지원센터 소장

라. 실행위원회 구성 및 기능(신설 제7조의2)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제46조의2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 제33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0. 9. 29. ~ 2010. 10. 19.(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현행조례 :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출력자 : 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권태희 2010-11-01 13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에 관하여" 를 "에 따른"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따사롬길19(초지동 604-3번지)" 를 "원초로 76(초지동)"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청소년기본법제18조" 로 하고,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는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년으로" 를 "3년 이내로" 로 하며 제3항 중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활동지원팀" 을 "통합지원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를 "여성가족부"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다음에 "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정신보건센터)" 를 추가하며,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과 과장" 을 "청소년 업무 담당국(소)장, 청소년지원단장" 으로 하며 제4항 중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을 "청소년 업무 담당국(소)장" 으로 하고 제6항 중 "1인을" "1명을" 로 하며 제8항 중 "범위 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아니한다." 를 "아니하다." 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실행위원회) ① 안산시 운영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실행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수 연계 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자,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원센터의 통합지원팀장을 간사로 둔다.

출력자 : 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김태희 2010-11-01 13

④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평생교육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평생교육과장 김 성 남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년담당 안 성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전 진 희 (행정 2219)

출력자 : 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김태희 2010-11-01 1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2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에 따른·····.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략) ② 지원센터는 안산시 단원구 따사롬길19(초지동604-3번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원초로76(초지동)·····.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청소년기본법 제18조」·····<삭 제>·····. ②·····3년 이내로·····. ③·····범위에서·····.
제5조(조직 및 직원) ① 지원센터는 소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직원) ①·····통합지원팀·····.

출력자 : 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김태희 2010-11-01 13

현 행	개 정 안
② 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자격요건,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 ····· ·····여성가족부 ····· ·····.
제7조(운영협의회) ① (생략)	제7조(운영협의회)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청, 법원, 경찰서, 지방노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 청소년 관련분야 교수·연구자·전문가, 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신설〉 관련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과 과장, 지원센터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 ····· ····· ····· ·····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정신보건센터) ····· ··. 청소년 업무 담당국(소)장, 청소년지원단장,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센터 직원과 수탁기관 관계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청소년 업무 담당국(소)장·····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⑥ ·····1명을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⑧ 협의회 및 실행우이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센터 직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 ····· 범위에서 ···· ·····. ····· ····· 아니하다.
〈신 설〉	제7조의2(실행위원회) ① 안산시 운영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실행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출력자 : 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김태희 2010-11-01 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자,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원센터의 통합지원팀장을 간사로 둔다. ④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의한다.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 ····· 「여성가족부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삭제〉 ·····.

초록과 · 지식정보사업소 평생교육과 김태희 2010-11-01 13